

준칙명	내부통제준칙
버전번호	V4.1
준칙번호	PR-CM-KR-008
리스크 타입 (Level 1)	Operational Risk
리스크 타입 (Level 2)	Regulatory Compliance Risk
업무범위 (Level 1)	Country Specific
업무범위 (Level 2)	N/A
적용지역	한국(Korea)
규정상태	일부 개정
효력개시일자	2018년 4월 1일
관련규정	내부통제규정
준칙 및 절차기준 및 주요통제	<p style="text-align: center;">총 칙</p> <p>1. 목적</p> <p>1-1. 이 준칙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2. 내부통제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2-1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p> <p style="padding-left: 20px;">1-2-2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적시성</p> <p style="padding-left: 20px;">1-2-3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은행의 정책 및 절차준수</p> <p>2. 내부통제의 운영원칙</p> <p>임직원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1.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p> <p>2-2.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p> <p>2-3.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적절하게 규정 및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u></p> <p style="text-align: center;"><u>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u></p> <p>3. 준법감시인의 임면</p> <p>3-1.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3-2.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u>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u>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4.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5.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5-1.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5-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5-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5-4.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 부서에 시정 요구

5-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표명

5-6.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5-7.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진술 (다만 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5-8. 준법감시 담당직원 등에 대한 일부 근무평정

5-9.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5-10. 기타 이사회·은행장·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준법감시부서

은행은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7-1.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7-2-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7-2-2.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

7-2-3.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검직을 금지한 업무

7-3. 준법감시인이 전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4. 은행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체제 운영

8.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8-1. 은행은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8-2. 8-1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2-1.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8-2-2.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8-2-3.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8-2-4.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8-2-5.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8-2-6. 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9.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9-1.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9-2. 준법감시인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9-3.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0.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10-1.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10-1-1.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10-1-2.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10-1-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10-1-4.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10-1-5.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10-2.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1.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12-1.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정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2-2.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10-3.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징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타 조직과의 협조

준법감시부와 감사부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부의 검사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상호 협의, 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관련 은행(임직원) 준수사항

14. 임직원의 의무

14-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제정한 행동강령(윤리강령 포함)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4-2.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14-3.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4. 임직원은 은행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14-5.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15-1.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5-1-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15-1-2.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15-1-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15-1-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15-2. 은행은 15-1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15-1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16-1.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6-2. 16-1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6-2-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16-2-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16-2-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17.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위,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

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재산상 이익제공

18-1.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8-2. 18-1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2-1.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18-2-2.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18-2-3.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

18-2-4. 18-2-3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18-2-5.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19.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19-1. 은행은 「은행법」 제52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예금 가입 등의 강요행위,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행위,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2.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9-3.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 금융사고의 예방

20-1.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 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20-1-2.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

20-1-3.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1-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

20-2. 은행의 임직원은 20-1에 따른 금융사고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21-1.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21-2. 은행은 자금세탁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1-3. 은행은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1-3-1.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21-3-2.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22. 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

22-1. 은행은 「은행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은행과 은행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2. 은행은 21-1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3. 광고

23-1.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은행법」 제 52 조의 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3-3. 은행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3-1. 금리, 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 공시할 것

23-3-2. 금융거래 단계별로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24. 보험상품 모집

24-1.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4-2-1. 제휴 보험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4-2-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4-2-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24-2-4.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24-2-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5. 금융투자업 관련 내부통제

은행은 경영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마련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의 별표3 중 4.호(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가 은행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5-2.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5-3.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5-4. 기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3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보칙

26. 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은행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27. 정보전달체제

27-1. 은행은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7-2. 은행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6-1 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8. 영업점 등 자체점검

28-1. 은행은 각 부정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정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검사(이하 “자점검사”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28-2. 은행은 자점검사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9.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개정

29-1. 은행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정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9-2. 은행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처 운영, 신고자 포상 등과 같은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9-3. 은행은 내부통제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행동강령 제·개정 및 운영을 준법감시부서가 아닌 여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법감시부서는 준수 여부 점검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0. 내부고발제도

30-1.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0-2.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행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명령휴가

	<p><u>은행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u></p> <p>32. 제·개정 이 준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 때 <u>용어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u>에는 <u>은행장이</u>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33. 세부지침 위임 <u>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장 혹은 규정관리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기타 관련문서</p>	
<p>정의</p>	<p>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내부통제기준</u>”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u>내부통제</u>”라 함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3. “<u>내부통제체계</u>”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4.“<u>준법감시</u>”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u>은행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과정</u>을 말한다. 5. “<u>준법감시체제</u>”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u>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u>를 말한다. 6.“<u>준법감시인</u>”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u>사람으로서 이 준칙 제 3 조에 따라 선임된 자</u>를 말한다. 7. “<u>법령</u>”이란 상법,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제 2 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p>그 밖에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u>은행법</u>’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보증확인	
준칙오너 (성명 및 직위)	준법감시본부장 최재만
문의처 (성명 및 직위)	팀장 이홍경 (본, 4432)
다음 검토일	2020년 3월 31일
번역버전	영어
번역첨부	Attached
검색시 핵심단어	N/A
준칙 관리자	팀장 이홍경 (본, 4432)
준칙시달 결재권자	준법감시본부장 최재만